

24. 상투메 프린시페(São Tomé Príncipe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79년
- 현행법 : 1990년(사회보장), 2004년(사회보호), 2014년(강제사회보장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. 적용대상

- 가입대상 : 근로자(공무원, 군인 포함), 자영자, 가사노동자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소득의 6%.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보험의 재원도 됨
- 자영자 : 공무원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의 10배 사이의 5단계 소득체계에 따라 신고된 소득의 14%(완전 급여) 또는 10%(부분 급여). 공무원 월최저임금은 1,100,000 dobras임. 자영자는 완전 급여(노령, 장애, 유족, 질병, 출산, 장제비)와 부분 급여(노령, 장애, 유족만) 중 선택하여야 함. 자영자의 보험료(완전 급여)는 질병 및 출산급여의 재원도 됨
- 사용자 : 임금지급총액의 8%.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보험의 재원도 됨
- 정부 : 필요시 보조. 사용자로서 기여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가입기간이 240개월 이상이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62세(남), 57세(여) 도달 자
 - 퇴직은 필수요건 아님
 - 연기연금 : 62세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
- 장애연금
 - 60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이 있고 66% 이상 근로 능력 상실 및 50% 이상 소득 활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정되는 경우
 - 장애위원회에서 근로 능력 상실을 판정
 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 활동에서 타인의 상시 간호를 요하는 경우 지급

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정지되며, 상시간병수당의 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가치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
○ 유족연금

- 사망당시 사망자가 노령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자일 경우 미망인(홀아비), 고아 또는 다른 부양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됨
- 배우자연금은 재혼시 중단됨
- 장제비 : 사망자가 12개월 이상 납부기간이 있거나, 연금 수급자인 경우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최종 15년 중 소득이 많은 10년의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2.5%를 보험료 납부년수 매년마다 가산하여 지급(최대 80% 지급)
- 월최저연금은 공무원 월최저임금의 40%
- 공무원 월최저임금은 1,100,000 dobras임
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이후 매년마다 연금의 2%씩 추가 지급
- 급여조정 : 연금조정은 물가인상 또는 다른 거시경제지수에 따라 조정됨

○ 장애연금

- 최종 15년 중 소득이 많은 10년의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2.5%를 보험료 납부년수 매년마다 가산하여 지급
- 월최저연금은 공무원 월최저임금의 40%
- 공무원 월최저임금은 1,100,000 dobras임
- 상시간병수당은 장애연금의 20% 지급
- 급여조정 : 연금조정은 물가인상 또는 다른 거시경제지수에 따라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30%를 각각의 수급가능한 고아에게 지급
- 부양가족연금: 고아가 없을 경우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%를 각각의 부양가족에게 지급
- 합산한 유족급여 최대액은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
- 장제비 : 장례비용을 최대 공무원 월최저임금의 2배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함

7.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연대가족부(Ministry of Labor, Solidarity, and the Family)
 - 전반적 감독

- 사회보장국가기구(National Institute of Seoul Security)
 - <http://seg-social-stp.net>
 - 제도 운영

<2017년 ISSA 자료>